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19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문금주 · 손명수 · 전진숙
임미애 · 이정문 · 어기구
이원택 · 장종태 · 문대림
신장식 · 임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물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모태펀드가 조성·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농림수산물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로 조성된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투자에 대한 기여 및 성과평가가 법적기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농림수산물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농림수산물모태펀드 투자금액 비중은 2025년 10월 기준 46.2%에 불과해 지역 균형 투자 차원에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가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아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해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성과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에는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이나 회사에 대하여 청

산 시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의 책무) (생 략)	제4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국가는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투자를 고 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7조의2(성과평가 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 표에는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 형발전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한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u>

평가 결과가 우수한 제8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조합이나 회
사에 대하여 청산 시 농림축산
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을 추가
로 배분할 수 있다.